

규 정 입 안 서

1. 입 안 부 서 : 국제교육원
2. 규정의 명칭 : 국제교육원 학사내규
3. 입안의 구분 : 개정
4. 입안의 사유 :
 - 가. 영어과정에 대한 교육부 영어트랙 인정 기준 적용
 - 위원회 결정사항 반영
 - 조문 오류 수정
5. 주 요 내 용
 - 가. 각 조항 : 신구조문대비표 참고

첨 부 :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 .

2026년 6월 10일

입안자 : 국제교육원장 이 한 영 (서명/인)



신·구조문대비표

□ 국제교육원 학사내규

현행 학칙	개정 학칙	비고
제5조(입학자격) AIGS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영어숙련자(영어능력시험 <u>TOEFL 530, CBT 197, IBT 71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[New TEPS 327점]</u> , (이하 행략)	제5조(입학자격) AIGS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영어숙련자(영어능력시험 <u>TOEIC 520, TOEFL (CBT 197, IBT 59[New IBT 3.5]], IELTS 5.5, CEFR B2, New TEPS 202</u> , (이하 현행과 같음)	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영어트랙 영어능력시험 기준 인용 (26.3.26) /한국어과정 영어 성적 통일
제6조(제출서류) ① 생략 1. 입학원서(Application Form) 1부 2.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여권 사진 2매 3. 신앙고백서 4. 학위증명서 5. 성적증명서 6. 영어능력숙련도 증명서 1부. 7. <u>추천서 3부</u> 8. <u>학업계획서 1부</u> 9. 전공수학계획서, 단 목회학석사과정은 제외 10. <u>장학금 신청서 1부</u> 11. 지원자 또는 후견인의 재정진술서 1부 12. 건강진단서 1부 13. 여권사본 1부 14. 재정능력증명서 1부 15. 전형료 16. 기타 사증발급에 필요한 제반 서류 ② 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<u>총장이</u>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.	제6조(제출서류) ① 현행과 같음 1. 현행과 같음 2.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1매 3.~6. 현행과 같음 7. 추천서 <u>2~3부</u> 8. 삭제 9. 현행과 같음 10. 삭제 11. ~15 현행과 같음 16. 기타 사증발급에 필요한 제반 서류 ② 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<u>원장이</u>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.	불필요한 입학서류 삭제
제16조(교육과정) ①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총장이</u> 따로 정한다.	제16조(교육과정) ①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총장이 정한다.</u>	불필요한 문구 삭제
제17조(등록 및 납입금) AIGS 재학생은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. 1. 과목수강(논문학점 포함): 학기당 수강 학점수에 따른 수업료 2. 신청학점이 0학점이나 학적유지 필요자(종합시험, 예비시험, 성경시험 미통과자 등)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	제17조(등록 및 납입금) 현행과 같음 1. 현행과 같음 2. <u>학점등록 및 논문등록을 매학기 하여야 한다. 종합시험, 예비시험, 성경시험등을 이유로 수강신청 없이 학적만 유지할 수는 없다.</u>	한국어과정은 학적유지가 가능하나, 외국인학생은 졸업관리를 위해 학적만 유지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.

현행 학칙	개정 학칙	
제19조(수강신청) ② 생략 ③ 목회학석사(M.Div.)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최저 <u>15학점 이상</u> 최고 20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.	제19조(수강신청) ② 현행과 같음 ③ 목회학석사(M.Div.)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<u>최저 12학점</u> 이상 최고 20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.	한국어 과정과 동일하게 맞춤
제20조(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) ③ 수강철회 후의 학점이 제18조의 수강 최저학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강철회를 할 수 없다	제20조(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) ③ 수강철회 후의 학점이 <u>제19조</u> 의 수강 최저학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강철회를 할 수 없다	(18조)논문재등록 규정-오류수정
제24조(계절수업) ① AIGS는 필요에 따라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수업은 <u>전일제 수업으로 하며, 이론과목은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</u> ③ 개설되는 과목의 수강인원은 학기당 정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④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24조(계절수업) ① 변동없음 ② 수업은 <u>전일제,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수업(온라인)을 개설할 수 있다.</u> ③ <u>이론과목은 15시간 강의를 1학점하되, 수강인원은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외국어 수업은 예외로 한다.</u> ④ 변동없음	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위원회 결정사항 반영
제44조(외국어) ① 학칙 제32조에서 정한 외국어시험은 과목 이수로 같음할 수 있다. ② 신학석사 과정자 중 이론신학(구약신학, 신약신학, 조직신학, 역사신학) 전공 학생은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③ AIGS의 석·박사통합과정자 및 박사학위 과정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1. 구약신학, 신약신학 전공 :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2. <u>조직신학, 역사신학, 선교학 전공</u> :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또는 라틴어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적절한 외국어 중 택일	제44조(외국어)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AIGS의 석·박사통합과정자 및 박사학위 과정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1. 구약신학, 신약신학 전공 :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2. 조직신학, 역사신학, 선교학, <u>실천신학</u> 전공 :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또는 라틴어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적절한 외국어 중 택일	2026학년도 실천신학 박사과정 개설에 따른 추가